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77호 2025. 1. 23.(목)

고시 · 공고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2
- 목포시 중점경관 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3
- 2030년 목포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공고----- 4
-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5
-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4
-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9
-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9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홍보과 ☎ 061-270-8539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건축물대장 말소 및 건물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물 등에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3일

목 포 시 장

○ 도로명주소 폐지 목록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지번 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 사유
목포시 산정공단로 63	연산동 1243-8	2025. 1. 23.	건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061-270-8313)에 문의 또는 목포시청 홈페이지(www.mokpo.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실제 주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해당 위치에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목포시 중점경관 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관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2035 목포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경관법」 제9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5. 1. 23.

목 포 시 장

1. 지정목적

「2035 목포시 경관계획」에 따라 경관가치가 높은 지역 및 경관저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경관을 보다 중점적으로 보전, 관리, 형성하기 위함

2.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북항 중점경관관리구역	청호로 219번길 34-22 일원	360,214	
목포항 중점경관관리구역	해안로148번길 14 일원	999,560	
유달산 중점경관관리구역	해양대학로 28번길 2 일원	1,236,770	
국도77호선변 중점경관관리구역	율도길 219 일원	261,778	
목포 근대역사문화 중점경관관리구역	번화로 18 일원	235,768	
목포역 원도심 중점경관관리구역	영산로 93 일원	248,055	
서산온금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해안로 71 일원	350,878	
평화광장 중점경관관리구역	평화로 79 일원	675,597	

3. 관계도면 : 게재 생략(지형도면고시도)

4. 고시도면 : 토지e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 에서 열람 가능

5. 열람장소 : 목포시청 도시디자인과(☎061-270-8422)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에 관계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30년 목포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공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2030년 목포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23.

목 포 시 장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2030년 목포 공업지역기본계획
- 계획범위
 - 공간적 범위 : 목포시 공업지역 전역 1.06km² (산업단지 및 항만구역 제외)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23년, 목표연도 2030년
- 계획내용 : 계획의 개요, 공업지역 여건분석, 공업지역 관리유형 구분, 관리유형별 구역 설정, 건축물 권장용도(업종계획), 공간정비방안, 환경관리방안 등

2. 주요내용

- 계획목표 :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지역특화산업의 경쟁력 창출 및 일자리 환경개선’
- 공업지역 관리유형 설정

관리유형	위 치	면 적(m ²)	구성비(%)	비고
합 계		1,061,699	100.0	
산업정비형	연산동 세라믹산단 인근 공업지역	398,710	37.6	
산업관리형	북항동 북항 일원 공업지역	409,309	38.6	
	유달동 목포해양대학교 일원 공업지역	99,877	9.4	
	옥암동 임성지구 일원 공업지역	128,093	12.1	
	부주동 옥암지구 일원 공업지역	25,710	2.4	

3. 관계도서 : 목포시 도시디자인과 비치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청 도시디자인과(☎061-270-84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23.

목 포 시 장

1. 제정이유

-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를 개선하고 출산 장려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원사업」의 세부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2. 주요내용

- 지급대상 · 지급액 및 지급내용(안 제4조 ~ 안 제5조)
- 지급신청 및 결정, 지급 중단 등(안 제6조 ~ 안 제7조)
- 수당의 반환(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5. 1. 23. ~ 2. 12.

5.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2월 12일까지 목포시장(청년인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입법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 방법 : 우편, 팩스(061-270-8791), 직접 방문 등

다. 의견 제출처 : 우 58613, 전남 목포시 양일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청년인구과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청년인구과(☎ 061-270-85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 주소를 둔 출생아동의 양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생기본수당”이란 제4조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2. “출생아동”이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 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 나. 전라남도 내에 출생신고를 하고, 지급 신청일 기준 목포시에 주소를 둔 아동
3.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출생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생기본수당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급대상) ① 시장은 출생아동에게 1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19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생기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지급 신청일 기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③ 시장은 동일한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수당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라남도-목포시 출생기본수당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생아동이 목포시 내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제5조(지급내용)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출생기본수당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 (이하 “지원아동”이라 한다) 또는 그 보호자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내의 출생기본수당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출생기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출생기본수당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동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보호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 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 또는 확인한 서류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 대한 출생기본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수당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중단 등) ① 시장은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목포시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출생기본수당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지원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4.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목포시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지원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하기 전에 목포시 외 전라남도 소재 시·군에 거주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라남도-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소급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이 제9조에 따른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소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원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성과평가) 시장은 사업 시행 후 5년마다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성과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를 종합평가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를 할 때 합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목포시 인구증가대책추진협의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출생기본수당 지급 절차
2. 제7조제4항에 따른 출생기본수당 소급 지급
3. 제8조에 따른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대한 성과평가
4. 그 밖에 출생기본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당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출생기본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출생기본수당이 지급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생기본수당을 지원 받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출생기본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1조(개인정보 수집) 시장은 출생기본수당 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출생기본수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목포시 출생기본수당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

동의자 (배우자 등)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성별)		수령자 성명	

본인은 전라남도-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수령을 포기하고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배우자 등이 전라남도-목포시 출생기본수당을 수령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인)

※ (인)은 자필 서명으로 한다.

전라남도-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소급 지급 신청서

소명인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통보 내 용				
소명 내 용				
20 . . .				
신청인 (서명)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 법 예 고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 1. 23.

목 포 시 장

1. 조 례 명 :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지자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영산강유역권 행정협회의의 보조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지원사업(안 제3조)
 - 사업비 지원(안 제4조)
 - 준용(안 제5조)
4. 조례제정(안) : 별첨
5.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6. 관련부서 의견

- 예산사항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규제심사(심의)대상 여부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기간 : 2025. 1. 23. ~ 2025. 2. 13. (21일간)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9.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2월 13일 18:00까지 목포시장(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나. 제출방법 : 우편, FAX, 이메일, 직접 방문

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목포시청 기획예산과 (정책개발팀)

- 주소 : (우 58613) 전남 목포시 양율로 203 (용당동)
- 전화 : 061-270-3624, 팩스 : 061-270-3578
- 이메일 : heylin941124@korea.kr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기획예산과(☎061-270-36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의 보조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란 영산강 보존 관련 행정사무를 상호 협의 처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1. 전라남도 목포시
2. 전라남도 나주시
3. 전라남도 담양군
4. 전라남도 화순군
5. 전라남도 영암군
6. 전라남도 무안군
7. 전라남도 함평군
8. 전라남도 장성군

제3조(지원사업)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영산강 보존과 개발을 위해 협의회에서 상호 협의 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산강 살리기 등 영산강의 보존 및 개발 추진사업
2. 영산강 연안에 대한 환경친화적 종합개발 및 자연생태계 보존 사업

3. 자원의 개발·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업
4. 환경오염 방지사설 및 감시에 관한 사업
5. 기타 협의회 의결을 거친 사업 등

제4조(사업비 지원) 시장이 제3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단체 또는 업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23.

목 포 시 장

1. 개정 이유

- 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정비하여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함으로써 자문단의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촉직 위원 정수 확대 및 당연직 위원 축소 (안 제3조)
-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 회의 소집, 회의 개최 횟수 변경(안 제8조)
- 자문단의 원활한 회의 추진을 위해 간사와 서기를 정책자문 업무 담당 부서장과 업무 담당 팀장으로 지정(안 제9조)
- 회의참석 수당, 자문료 등 지급 기준 정비(안 제13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1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 여부(감사실) : 원안 동의
- 규제심사 대상 여부(기획예산과)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여성가족과) : 해당 없음

7. 예산사항 :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 2025. 1. 23. ~ 2025. 2. 13. (21일간)

9.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10.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2월 13일까지 목포시장(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기획예산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78), 직접방문 등

11.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기획예산과(☎061-270-833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35인”을 “50명”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 소관 분야 실·국·소장 및 담당 과장으로 한다.”를 “분과위원회의 소관 업무 담당 국·소·단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로 개정한다.

제6조제1항과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자문단은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제1항 중 “단장”을 “시장 또는 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2회”는 “1회”로, “정책자문이 필요할 시에 개최한다”를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분과위원장과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 자문이 필요한 해당 업무 실·과장이 개최한다.”를 “회의는 분과위원장과 소관 업무 담당 국·소·단장이 협의하여 개최하며, 연 2회 이상 개최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담당업무 팀장”을 “정책자문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담당 업무 담당자가”를 “정책자문 업무 담당 팀장이”로 하고, “주무팀장”을 “부서장”으로, “담당자가”를 “주무팀장이”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를 “회의 참석 수당, 자문수수료, 원고료, 연구·조사 소요 실비,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수당 지급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당 등 지급기준(제13조제3항 관련)

구 분		지 급 기 준 액
회의참석 수 당		1회당 100,000원 한도에서 지급
자 문 수수료	대면 · 화상회의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최대 30만원)
	서면 · E-mail	1회 당 10만원
원고료	A4 용지	1면 당 13,000원 - (지급규격) ① 1면 기준 300자 또는 ②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연구·조사 소요 실비		정책 연구·조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보전 경비 지급
여 비		1. 공무원인 자 - 「공무원 여비 규정」제3조 [별표 1] 적용 2. 공무원이 아닌자 - 「공무원 여비 규정」제30조 [별표 9] 적용 - [별표 9]의 4. 민간기업체의 임원·직원, 5. 그 밖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제4조 적용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u>1인</u> 과 부단장 <u>1인</u> 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으로 <u>35인</u> 이내 구성하며, <u>당연직 위원은 해당 소관 분야 실·국·소장 및 담당 과장으로 한다.</u> ②~③ (생략)	제3조(구성) ① - - - - - - - - - - <u>1명</u> - - - - - - - - - - <u>1명</u> - - - - - - - - - - - - - - - <u>50명</u> - - - - - - - , <u>분과위원회의 소관업무 담당 국·소·단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u>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분과위원회) ① 자문단 <u>의</u>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u>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u> <u>1. 에너지경제</u> <u>2. 관광문화</u> <u>3. 해양수산</u> <u>4. 도시환경</u> <u>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제6조(분과위원회) ① -----은 ----- ----- <u>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u>1. (삭제)</u> <u>2. (삭제)</u> <u>3. (삭제)</u> <u>4. (삭제)</u> <u>5. (삭제)</u>

② (생 략)

- ③ 소관 분과위원장은 소관부서 실·국·소장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 자문단의 회의는 단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정책자문이 필요할 시에 개최한다.

-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 자문이 필요한 해당 업무 실·과장이 개최한다.

④ (생 략)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생 략)

- ② 자문단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경우 분과별 선임 주무팀장이 간사가 되고 서기는 선임부서 담당자가 된다.

제13조(수당 등) ① 위원과 특별보좌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② (현행과 같음)

-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회의) ① ----- 시장 또는 단장-----, -----

- ② ----- 1회 -----, -----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 소관업무 담당 국·소·단장이----- 개최하며,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

- ② ----- 정책자문 업무 담당 부서의 장-----, ----- 정책자문 업무 담당 팀장이 -----, ----- 부서장 ----- 주무팀장이 -----.

제13조(수당 등) ① ----- 회의 참석 수당, 자문수수료.

수당,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원고료, 연구·조사 소요 실비,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의 수당 지급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23.

목 포 시 장

1. 제정 이유

-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정책자문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분과위원회 설치 (안 제2조)
- 자문결과 활용 (안 제3조)

3. 제정시행규칙안 : 붙임

5. 관계법령

-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 여부(감사실) : 원안 동의
- 규제심사 대상 여부(기획예산과)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여성가족과) : 해당 없음

7. 예산사항 :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 2025. 1. 23. ~ 2025. 2. 13. (21일간)

9.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10.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2월 13일까지 목포시장(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일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기획예산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78), 직접방문 등

11.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기획예산과(☎061-270-833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목포시 규칙 제 호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정책자문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과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의 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1. 관광문화교육 분과위원회
2. 미래전략산업 분과위원회
3. 해양수산환경 분과위원회
4. 도시공원 분과위원회
5. 안전건설교통 분과위원회

제3조(자문결과 활용) 목포시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각 분과위원회 자문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